**SEDG 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SEDG(Soongsil English Drama Group)로 한다.

**제 2조 [목적]**

① SEDG는 숭실대학교의 영어연극 동아리이며, 정기공연으로 연극 혹은 뮤지컬 작품을 공연해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동아리 소재]**

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2장 임원진**

**제 1조 [임원진의 임기]**

①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정의한다.

② 임원진의 임기는 기본 6개월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2조 [임원진 선출 방식]**

① 임원진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임원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② 임원진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임원진 지원자를 받는다.

③ 차기 임원진의 선출은 임원진의 상의 하에 결정한다.

**제 3조 [임원진]**

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무는 회계장부 기록을 수행한다.

④ 임원진은 신입생 관련 업무 및 비품관리 등을 수행한다.

⑤ 임원진의 의결은 전체 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회의는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⑥ 임원진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의무]**

① SEDG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학생

② SEDG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SEDG에서 공지한 기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1. 동아리 지원서 작성
2. 동아리방 방문 후 임원진과 면접

**제 3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임원진에게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

②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1. 폭력, 욕설 등의 행동으로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2. 타당한 이유 없이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동아리 공지방을 나가는 경우
4. 기타 임원진의 판단으로 동아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③ 동아리 탈퇴 시 납입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4장 회의**

**제 1조 [정기 모임]**

① SEDG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공연을 위한 연습을 진행한다.

②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1. 소모임 개최를 원하는 부원은 임원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모임의 규칙은 임원진 입회 하에 소모임장이 정한다.
3. SEDG의 소모임은 SEDG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SEDG는 학기에 한 번 이상 연극 혹은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뒤 감상평을 기록한다.

**제 2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원진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원진의 판단 하에 임원진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1조 [수입]**

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 2조 [회비]**

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회비는 임원진 회의에서 정하며, 24년도 상반기는 신입부원 40,000원, 기존 부원 35,000원으로 한다.

② 모든 지출은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 3조 [결산보고]**

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1.29]

개정 1판 [2020.03.03]

개정 2판 [2022.03.05]

개정 3판 [2023.03.17]

개정 4판 [2024.03.18]

**제 2조 [회칙 개정]**

① 본 동아리의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 3조 [이외 사항]**

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